

	<h1>보도자료</h1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래창조 금융 · 따뜻한 금융 · 튼튼한 금융
	<h2>2.29(월) 조간부터 보도 가능</h2>	

작성부서	현장지원단 현장점검팀		
책임자	김성조 팀장	담당자	김종식 사무관(2156-8005)
배포일	'16. 2. 26 (금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5 매

제 목 :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행정규제와 민원·소비자보호, 양 측면을 감시하는 「금융위원회 옴부즈만」 출범

-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감시
-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민원·소비자보호 등도 점검

1. 개요

- **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성, 금융당국·업권으로부터 독립성 등을 고려,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을 위촉**
- **옴부즈만은 향후 2년간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**

< 「옴부즈만 위촉식 및 KICK-OFF 회의」 개요 >

- **일시/장소:** 2016.2.26(금) 14:00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
- **주요 참석자**
 - 금융위원장
 - 위원장 옴부즈만, 간사 옴부즈만, 업권별 옴부즈만 등 7명
 - 금융현장지원단장, 금정과장, 소비자과장, 규제개혁법무담당관, 현장점검팀장
 - 금융감독원 부원장보(업무총괄), 법무실장
- **주요 내용:** 금융위 옴부즈만 위촉장 수여 및 향후 운영방안 논의

2. 옴부즈만 출범 배경

1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상시 점검·개선 시스템 구축

- 「금융규제 운영규정(16.1.4)」을 통해 행정지도·감독행정을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로 운영하는 책임성 확보장치*를 마련

- (금융행정지도)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(반드시 문서로) 요청하는 행위 → 등록·공개 의무화, 불이익 조치 금지
- (감독행정)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이 법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(반드시 문서로) 제시하는 감독행위 → 내부보고, 등록·공개 의무화

- 이를 위해 금융위에 옴부즈만을 설치하도록 규정

금융규제운영규정 제18조(옴부즈만)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,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하는 감독행정작용이나 금융행정지도, 그 밖의 금융규제에 대한 ... 개선·시정을 건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옴부즈만을 둔다.

- 금융당국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시각에서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 체계 구축이 필요

- 특히 금융회사의 실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인식되는 그림자규제*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는 노력이 중요

* 지도공문, 구두지시, 협회 자율규제 등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비정형화된 규제

2 현장수요 중심의 민원제도·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구축

- 금융민원은 소비자불만, 정책평가, 시장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에 활용 필요

※ 영국은 금융옴부즈만과 금융감독기관(FCA)이 협력하여 집단분쟁건수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 실시

→ **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독립된 지위에서**

- ①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·개선하고,
- ② 민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옴부즈만을 위촉·운영

3. **옴부즈만 구성 및 역할**

□ (구성)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,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 임명

- 각 업권별 민간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되며 고충민원 등의 심의·의결 등을 위해 분기별로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

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명단 】

구분	성명	현 직위	경력
위원장	장용성	▪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	▪ 금융위 금융개혁회의 위원 ▪ 한양대 경영대 특훈교수
간사	윤혜선	▪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	▪ 미국·캐나다 변호사 ▪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
은행	심인숙	▪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	▪ 사시28회 ▪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
보험	김현수	▪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	▪ 보험개발원 ▪ 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 회장
비은행	구정환	▪ 금융연구원 중소기업금융 소비자보호실장	▪ 증권학회지 편집위원 ▪ 금융연수원 자문교수
금투	윤승한	▪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회 위원장	▪ 대우증권 상근감사 ▪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
소비자	김소연	▪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	▪ 소비자학회 이사

□ (역할)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·정비하고 현장수요 중심의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

- ① 금융행정지도·감독행정의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개선권고·건의 및 의사표명
- ② 지도공문, 구두지시, 협회 자율규제 등 그림자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효력·준수·조치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
- ③ 민원 등*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민원제도 및 금융 소비자보호제도에 피드백(의견수렴 채널로서의 옴부즈만)

* 옴부즈만은 개별 분쟁조정절차가 아니라 민원·소비자보호 프로세스 및 제도 개선 역할을 수행

4. **주요 발언내용**

□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를 개선 민원·소비자보호제도 개선이라는 양 측면에서 옴부즈만이 「제2단계 금융개혁」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하면서,

- ①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행정규제를 하는지를 감시하고,
 - ② 금융회사 실무자들에게 명시적 규제 못지않게 큰 부담으로 인식되는 그림자규제의 발굴·정비,
 - ③ 금융회사에 대해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
- 이와 함께 옴부즈만이 향후 성공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스스로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

□ 장용성 위원장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개혁의 양 날개라고 하면서

- 한 쪽 날개로만 하늘을 날 수 없듯 금융행정규제 개선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균형잡힌 역할을 해나갈 예정
- 금융소비자의 민원등 다양한 의견을 소비자보호제도에 반영하는 영국의 금융옴부즈만 우수운영사례처럼 우리 옴부즈만이 한국적 옴부즈만의 성공사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

[별첨 1] 임종룡 금융위원장 인사말씀

[별첨 2] 「금융위원회 올부즈만 Kick-off 회의」 회의자료

[별첨 3] 「금융위원회 올부즈만 운영규칙」 제정규정안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